



2022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 **LAW** 킥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 일시 |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19:00 - 22:00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



2022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 **LAW** 킷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목차

| 사회 | 이도경(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 | 발제 1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일지 분석을 통해 보는  
역고소 실태** **05**  
윤경진(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 | 발제 2 | **역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수사기관 인지 무고 사례를 중심으로** **25**  
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 
- | 토론 1 |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역고소 대응전략** **37**  
박선영(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 
- | 토론 2 | **성폭력 역고소/무고 인지 피해로부터의 보호** **53**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2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 *LAW* 킷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발제 1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일지 분석을 통해 보는 역고소 실태

윤경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보는 성폭력 역고소 실태

| 윤경진 |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1. 들어가며

2018년 미투운동 당시 성폭력피해자의 말하기의 확산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넘어선 보복성 역고소였다. 가해자들의 역고소는 최신현황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흔히 ‘역고소’하면 떠올리는 무고, 명예 훼손 외 다양한 유형의 형사적 역고소를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방어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또한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성범죄 가해자 전문 법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대검찰청 성폭력무고사건처리 통계<sup>1)</sup>’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불기소율은 84.1%에 이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5.9%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대선캠프 시절 성폭력 무고죄가 심각하다며 처벌 공약을 내세웠다. 이러한 현실에 법적 대응, 공동체 내 대응 등을 고려하는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은 보복성 역고소에 대해 큰 두려움 가지며 위축되었다.

상담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을 체감하고 있어 현장에서 드러나는 역고소의

1)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특징과 현황을 파악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이 모든 성폭력 사건의 역고소 사건 지원의 현황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상담 미투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상담일지 중 실제 역고소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상담일지 77건을 분석했다.

## 2. 성폭력역고소 상담통계(2019년~2021년)

### 1) 지속지원 빈도

〈표 1. 분석대상 사례의 상담횟수〉

단위: 건(%)

	빈도(건)	백분율(%)
1회	35	45.5
2회 이상	42	54.5
합계	77	100.0

〈표1. 분석대상 사례의 상담횟수〉를 보면, 역고소 피해가 파생된 성폭력 사례 77건 중 2회 이상의 지속상담 사례는 42건(54.5%)에 달하는 절반 이상의 수치로, 역고소 상담사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회 이상 지속된 상담사례 42건(100%) 중 본 상담소에서 성폭력 원사건을 지원하던 중 역고소가 발생한 경우가 18건(42.9%), 역고소 피해를 입은 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27건(64.3%)이었다. 1회의 초기상담만 진행된 사례의 경우는 역고소 피해 이후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여 내담자 거주지역 인근에 있는 상담소로 연계의뢰를 하거나, 이미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개인적인 대응 중인 사례들이 있었다. 이미 개인대응을 진행 중임에도 본 상담소에 전화한 사례의 경우에는 역고소 대응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감, 역고소로 인한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 사선변호사의 성인지 감수성 부



재, 역고소 사건 담당 수사관의 부정적인 태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 2) 성폭력 역고소피해의 원사건(성폭력사건) 현황

〈표2. 원사건(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성별·피해유형〉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카메라 이용촬영	미상	총계
여	23 (29.9)	2 (2.6)	12 (15.6)	25 (32.5)	9 (11.7)	2 (2.6)	1 (1.3)	74 (96.1)
남	1 (1.3)	-	-	2 (2.6)	-	-	-	3 (3.9)
총계	24 (31.2)	2 (2.6)	12 (15.6)	27 (35.1)	9 (11.7)	2 (2.6)	1 (1.3)	77 (100.0)

〈표2.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성별·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강간>준강간 순으로 나타난다. 강제추행과 강간피해가 추후 역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판단기준인 최협의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협소한 판단기준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준강간의 경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것을 검찰, 즉 사실상 성폭력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보복성 역고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 시 완전히 기억을 잃었다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 어려움을 느끼고, 반대로 기억나는 일부라도 진술하게 되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자다움의 통념들로 인해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다.



〈표 3 원사건(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성별·연령 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60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총계
여	1 (1.3)	65 (84.4)	8 (10.4)	-	-	74 (96.1)
남	-	2 (2.6)	1 (1.3)	-	-	3 (3.9)
총계	1 (1.3)	67 (87.0)	9 (11.7)	-	-	77 (100.0)

〈표 3. 원사건(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성별·연령 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의 74건(96.1%)이 여성 피해자이며, 이 중 성인피해자는 65건(84.4%)을 차지한다. 성인 남성 피해 3건(3.9%)의 경우 성인 남성 가해자가 성인 남성 피해자를 역고소한 사례이다.

〈표 4. 원사건(성폭력사건) 가해자 성별·연령 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60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총계
여	-	1 (1.3)	-	-	-	1 (1.3)
남	2 (2.6)	68 (88.3)	5 (6.5)	-	-	75 (97.4)
미상	-	1 (1.3)	-	-	-	1 (1.3)
총계	2 (2.6)	70 (90.9)	5 (6.5)	-	-	77 (100.0)

〈표4. 원사건(성폭력사건) 가해자 성별·연령 현황〉을 보면, 성폭력 사건에서 75건(97.4%)의 가해자는 남성이며, 가해자의 연령이 성인인 경우는 70건(90.9%), 청소년인 경우는 5건(6.5%)이었다. 성인의 경우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나 재력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역고소하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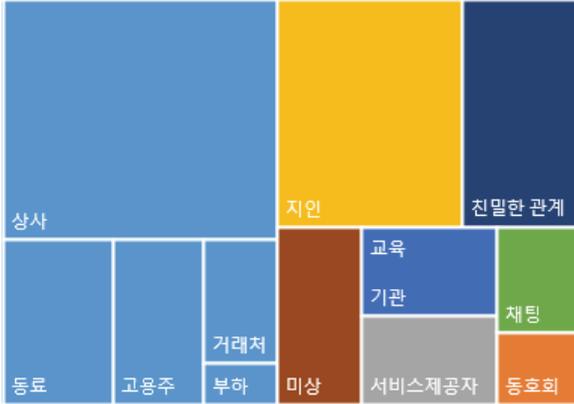


대부분이었고,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5건(6.5%) 모두 가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이 개입하여 역고소한 경우이다.

〈표 5. 원사건(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건(%)

교육 기관	동호회	서비스 제공자	지인	직장 및 공동체 (총계 36건(46.8%))					채팅	친밀한 관계	미상	총계
				고용주	상사	동료	부하	거래처 등				
4 (5.2)	2 (2.6)	4 (5.2)	14 (18.2)	5 (6.5)	22 (28.6)	6 (7.8)	1 (1.3)	3 (3.9)	3 (3.9)	9 (11.7)	5 (6.5)	77 (100.0)



〈표5. 원사건(성폭력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 및 공동체가 36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이웃, 주변인의 지인 등)인 경우가 14건(18.2%), 그다음 친밀한 관계가 9건 (11.7%) 순이었다. 직장 및 공동체의 경우 가해자가 고용주이거나 상사인 경우가 27건(35.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는 가해 사실이 알려지거나 법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시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보복성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여 공론화와 대응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인이거나 친밀한 관계인 경우, 주변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같은 조직 또는 공동체에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직장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스스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도록 보복성 역고소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3) 역고소 피해자 및 피해 유형

〈표 6. 역고소 피해자별 역고소 유형〉

단위: 건(%)

역고소 유형 역고소 성폭력 피해자	무고 (가해자)	무고 (검사인지)	명예 훼손	손해 배상	폭행	위증	공갈	행정 소송	기타	총계
본인	27 (26.2)	3 (2.9)	29 (28.2)	6 (5.8)	13 (12.6)	2 (1.9)	4 (3.9)	-	10 (9.7)	94 (91.3)
조력인	-	-	3 (2.9)	-	1 (1.0)	1 (1.0)	-	1 (1.0)	3 (2.9)	9 (8.7)
총계	27 (26.2)	3 (2.9)	30 (29.1)	6 (5.8)	14 (13.6)	3 (2.9)	4 (3.9)	2 (1.9)	12 (11.7)	103 (100.0)

〈표 6. 역고소 피해자별 역고소 유형〉을 살펴보면 총 103건으로, 원사건(성폭력 사건)에서 역고소 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난 경우 각각의 건수로 중복 집계하였다. 역고소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조력하는 주변인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피해자 본인이 역고소피해를 입은 경우는 94건(93.1%)이었고, 피해자를 조력하는 주변인이 역고소피해를 입은 경우는 9건(8.7%)을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역고소피해를 입은 경우, 명예훼손과 무고가 각각 29건(28.2%), 27건(26.2%)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 폭행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역고소 된 사례가 13건(12.6%),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소된 사례가 6건



(5.8%), 공갈로 고소된 경우가 4건(3.9%), 위증으로 역고소 된 사례도 2건(1.9%)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무고 인지하여 기소된 사례도 3건(2.9%) 있었다. 기타 10건(9.7%)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주거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다양한 유형의 역고소 피해 사례가 있었다. 사례 중에는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서 피해자를 역고소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조력인이 역고소피해를 입은 경우, 명예훼손이 3건(2.9%)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으로 고소되거나 위증으로 고소된 사례도 각 1건씩 있었다. 행정소송 1건(1.0%)의 경우, 직장 내 성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불복절차를 진행한 사례이며, 기타 3건(2.9%)에는 정보통신보안법위반, 감금, 강요 등의 역고소 피해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역고소는 주변 지지자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자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 3. 상담일지를 통해 본 보복성 역고소 특징<sup>2)</sup>

#### 1) 피해자의 말하기와 조력인 차단하기

역고소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명예훼손의 경우, 성폭력피해자가 문 제해결을 위해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공론화를 시도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피해를 입었다.

**사례 1** 20XX년 직장에서 상사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를 고소했다가 주변의 압력으로 고소를 취하함. 이후 2018년 미투운동 당시 인터넷에 피해 내용과 가해자의 실명을 게시함.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됨.

2) 본 발제문에 표기된 사례의 경우, 내담자가 사전 연구목적활용에 동의한 사례에 한하여 내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내담자의 신상정보 및 기타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최소화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석 내용 없이 사례만 인용될 경우 피해경험이 왜곡될 수 있어 사례의 문구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금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2** 대표에 의해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SNS를 통해 공론화하자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됨. 피해 당시 여러 목격자가 있었으나, '피해자를 도와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보복을 예고하여 목격자들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아 방어에 어려움을 겪음.

위 사례의 피해자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내 문제로 피해를 바라보고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공론화를 진행했다. 반대로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자원과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를 이용해 어렵지 않게 역고소를 감행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가해자와 사회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내담자도 역고소 피해를 입는다.

**사례 3** 데이트 관계로부터 카메라이용등촬영 피해 입음. 공동체 내에 피해자가 여러 명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SNS를 통해 공론화를 함. 이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사례 4** 현 데이트 상대에 의해 있던 강간피해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함. 벌금형 50만 원 확정.

〈사례 3〉의 경우 가해자는 대학생으로 가해 사실로 인해 졸업이 어려워지거나, 졸업하더라도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역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4〉는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SNS에 게시했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던 가해자와의 관계성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 서로 엮어져 있어 가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직장 또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판단에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언급한 네 사례와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자가 피해자로서의 권리회복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통해 공동체 또는 우리 사회의 반성과 변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피드백 없이 형사상 역고소를 받게 되면 성폭력 피해사실이 희석되고,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호해지는 현실을 마주했을 땐 큰 좌절감을 겪는다.

피해자를 돕는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다.

**사례 5** 피해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과거 조직 내 피해경험을 짧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해당 조직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함. 이를 막기 위해 조력인이 다른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당 조직은 조력인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함.

**사례 6** 성폭력 피해 사건 당시 목격자가 피해자를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섬. 가해자는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함.

**사례 7** 가해자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함.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사례 5〉와 같이 직장 내 성폭력 피해가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와 명예 실추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측은 적극적으로 무마하고 대응을 저지하려 나선다. 회사가 조력인을 공격함으로써 피해자 편에 있던 동료들은 본인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는 피해자를 고립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주변 지지자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자원 차단을 주목적으로 행해지는 주변인들에 대한 역고소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취하는 적극적인 방어 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대응 및 자원의 차단을 위해 조력인들이 실제로 겪고 목격한 일을 모두 부정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이처럼 가해자들이 피해자나 조력인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모두 불신하게 만들려는 역고소 유형 중 하나인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 후 증인이 거짓으로 자



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사례 6>, <사례 7>에서는 위증죄를 넘어 ‘모해’위증죄라는, -단순한 거짓 진술이 아닌 상대방을 모해할 의도로, 즉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죄가 성립되는- 위증보다 무거운 죄질로 처벌도 더 엄중히 다루지는 죄목으로써 조력인을 곤경에 처하게 한다. 역고소로 피의자의 신분이 된 조력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사례 7>의 조력인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방어가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었으나, <사례 6>의 조력인은 물질, 인적 자원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여 대응에 난항을 겪었다. 해당 사례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피해자들은 조력인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곤란함과 미안함을 느끼며 대응에 있어, 특히 인적 자원 활용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 2) 피해자의 수사·법적 대응 과정 방해하기

처벌과 이를 통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대응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역고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 사례 8** 준강간 피해로, 당시 기억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 중 한 명이 가해자를 불러내어 자백을 받고 녹음을 함. 가해자 측은 위 행동에 대해 감금죄, 강요죄로 역고소.

**▶ 사례 9** 형사소송 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증거로 제출한 회사 내부 서류와 녹취록에 대해 각각 사문서위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가해자가 역고소.

가해자들의 취하는 역고소 전략은 위 사례처럼 피해자나 조력인이 사건해결 과정에서 한 대응에 대해 문제를 삼는 방식을 취한다. <사례 8>의 경우 역고소 피해 당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실제로 불기소가 되었지만, 가해자 측의 보복성 역고소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소된 조력인도 큰 스트



레스로 일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례 9> 또한 불기소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이 과정에 대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에 할 수 있는 걸 다하려고 하지만 너무 지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역고소 전략은 성폭력사건(원사건) 대응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소송 대응에 대한 부담과 피로도를 높여 원사건 대응의 집중을 방해한다.

한편, 가해자들의 역고소 전략은 마치 가해자가 무고한 위치에 있다는 인상과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강화하는 ‘피해자다움’의 통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사례 10**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가해자 측에 사과를 요구하자 고소를 만류하며 합의를 제안함. 합의금 조정 중 가해자는 피해자를 공갈미수로 고소했고, 피해자는 회사에서 꽃뱀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2차 피해 발생.

**◦ 사례 11**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 중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는 녹화영상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는 장면을 삭제한 뒤 증거자료로 제출함.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무고로 역고소.

<사례 10>과 같이 범죄 피해에 따른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보상 요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폭력을 거짓 고발하였을 것이라는 통념에 기인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금전적 보상이 아닌 진정한 사과만을 원할 것이라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이러한 통념을 토대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 ‘큰 금액을 요구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진정성 없는 피해자로 몰아간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큰 위협으로 작동되어, 다른 범죄와 달리 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sup>3)</sup>

3) 장다혜, “성폭력·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학위논문, 2012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가해자의 집 등 피해 공간에 따라 —특히 거부 없이 따라간 경우— 암묵적 동의로 보거나 피해경험 자체를 의심받기도 하는데 <사례 11>의 경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피해공간이 숙박업소나, 가해자의 집, 출연에 동의한 상태인 인터넷 방송 등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장소가 비난받지 않을 만한 공간이어야지만 더 피해자에 가깝다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강고한 통념은 피해자를 한순간에 피의자의 위치로 전환시킨다. <사례 11>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에 거부의를 밝히는 장면도 함께 제출되었다면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를 순수히 인정하였을까? 피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피해자를 피해자로 판단하지 않는 재판부의 편견은 여전히 그대로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보복성 역고소는 사회적통념과 수사·재판 기관의 인식과 맞물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는 소위 말하는 ‘꽃뱀’이 아님을 항변하는 상황에 놓이며 원사건 대응 과정에 큰 위축을 경험한다.

### 3) 성폭력 역고소를 성립시키는 요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

---

년, 346쪽.



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그러나 역고소 피해 상담일지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 상담일지를 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무고 의심을 경험한다. 피해 직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해 전후로 가해자와 문자메시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피해 이후 가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피해 이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한 점 등 다양한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고 의심을 받는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피해자 다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무고 혐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을 주요하게 다투게 된다. 그런데 준강간의 경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성폭력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 진술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무고혐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례 12** 준강간 피해 이후 바로 고소 후 DNA 채취까지 마침. 피해자는 피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1%는 심신상실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이후 가해자는 무고로 형사고소를 하진 않았으나, 무고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함.

**사례 13** 약물에 의한 준강간 피해. 담당 검사는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 가해 당시 가해자가 녹음한 파일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부분을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함.

두 사례 모두 여러 정황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무고로 의심받고, 실제로 <사례 13>은 기소로 이어졌다. <사례 12>의 경우, 상담일지 상엔 정확히 어느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측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는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



는다고 진술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 정도로 심실상실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심을 받았다. <사례 13>의 경우, CCTV에 피해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전, 후의 피해자의 모습이 찍혀있었는데,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상태나 피해자가 저항 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심을 가졌다. 이와 같은 사례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술에 덜 취한 가해자의 기억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당시 기억이 없어 진술 자체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일부분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고 기각한다.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과 어떻게 상호 합의하에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히 성적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 정황을 토대로 법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사례는 정말 무고한 것일까? 2019년 대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직장상사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재정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1, 2심에서 무고죄가 인정됐다. 이와 달리 3심 대법원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했다.

무고죄 원심에서는 1)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되었고 2)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이후 산책도 했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3)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술집에서 나온 뒤의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왔고 4) 공소외인이 당시 피고인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5)실제 공소외인의 행위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요청했을 텐데, 그와 같이 대처하지 않고 6) 피고인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아 고소했다는데, 공소외인은 사건 다음 날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참조]

반면 대법원은 1)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2)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기습 추행도 포함 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지 그 동의를 반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공소외인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4)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때와 1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른 점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기 어렵다 보았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위 판결문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적시하고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유무죄 인정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문(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sup>4)</sup>을 인용했다. 이는 성폭력 사건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있는 판결로 보인다.

### 5) 성폭력 역고소 사건, 대응의 어려움

〈표 6. 역고소 피해자별 역고소 유형〉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 본인이 역고소피해를 입은 경우는 94건(93.1%), 성폭력피해자를 돕는 조력인이 역고소 피해를 입은 사례 또한 9건(8.7%)에 달한다. 역고소 피해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외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하고, 피고인 국선 변호인제도로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대응에 난항을 겪는다.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미 원성폭력 사건에서 지원금을 다 소진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들도 있다. 더군다나 성폭력피해 당사자가 아닌 조력인들은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구조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018년 5월, 대검찰청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년 5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더라도 검찰은 해당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무고 사건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sup>5)</sup>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2021

4)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4. 12. 제자인 여학생들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된 대학 교수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❶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❷ 또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보도자료, 대법원공보관실(2018년 4월 12일 게시)

5) 최란, 「'진짜'성폭력피해자와 '가짜'성폭력피해자를 선별하는 성폭력 무고 수사과정의 문제」,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호.(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2018년. 105쪽.



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에 따르면 역고소 55건(100%) 중 경찰 단계에서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3건(5.9%), 불기소 결정 후가 5건(9.8%)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측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역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통해 수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등의 수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아직 수사가 완료된 것이 아닌데도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실무상의 문제점이 있다.

#### 4. 나가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성폭력 역고소 실태를 살펴보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소나 공론화 등 법 안팎에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때, 피해자를 괴롭히고 위축시키는 가해자들의 전략은 점점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공적인 법적 지원체계들은 다양해지는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 전략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했고, 가해자들의 공격은 갈수록 강해짐으로써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들 역시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알아보게 되거나 변호사 선임이 부추겨지기도 했다. 가해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리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성범죄 전담 법인의 홍보와 고객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성폭력의 법적 해결을 시장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은 점차 개별적인 자원들을 통해 대응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개인화되어가고 있다.<sup>6)</sup>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흐름 속에서 보복성 역고소가 남용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

6) 김보화,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20년, 71쪽.



로서 성폭력 국선 변호사의 조력 범위가 확대되어 역고소피해 시에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역고소 된 피해자의 조력인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검찰청 성폭력수사 매뉴얼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원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완료된 뒤 진행하도록 하며, 특히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의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혼선 없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무고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으로 파생된 다양한 역고소 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뉴얼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복성 역고소 자체가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 2018년 미투운동 당시 성폭력피해자들의 말하기를 통해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남성중심적 문화나 구조, 권력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 요구가 강화되면 될수록 성폭력 법적 해결과정에서의 백래시가 심화됨을 현장에서는 체감한다. 시대를 역행하는 '성범죄 무고죄 강화' 라는 낡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된 정책과 실행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022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 **LAW** 킷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발제 2

**역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수사기관 인지 무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 역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수사기관 인지 무고 사례를 중심으로

## | 이소희 |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 1. 수사기관 인지 성폭력 무고죄 사건 경과

2019.08

직장상사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2019.10

동일한 직장상사에 의한 준강간 미수 피해 발생

2019.12

- 상급자(팀장)에게 피해 사실 고지 및 가해자 징계 요구
- 회사 측 피-가해자 분리 조치만을 이행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및 가해자 징계 조치 미이행  
가해자 피해자 상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고소  
회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 전달,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연속적인 불이익 조치 발생

- ① 피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사측의 제대로 된 조사 및 징계 절차 미이행
- ②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켜 두 사람 모두에게 징계를 내리게 된다는 회사의 결정 전달
- ③ 피해자의 기존 업무 모두 배제
- ④ 가해자에 대하여 "힘든 일이 있으니 잘 해주라"라는 말을 상급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하면서 피해자 배척
- ⑤ 피해자가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가해자 전보 조치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 분리조치 미이행

- 피해자 회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로 형사고소 진행



**2020.04**

가해자 피해자 상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

**2020.08.10.**

피해자 성폭력 사건 고소인 신분 상황 속에서 담당 검사 “무고인지 정황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며 성폭력 사건 처분 전에 무고 수사 요구함.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 혹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염려 속에서 무고사건 수사 협조

**2020.08.19**

- 피해자 성폭력(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형사고소 건 검찰 불기소 처분
- 검찰 무고죄 공소제기
- 성폭력 사건 불기소처분, 피해자 항고 진행 함.

**2020.08.28**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라는 회사 취업 규칙을 근거로, 회사는 무고죄 공소제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함.

**2020.10**

성폭력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피해자 대법원 재정신청 진행

**2020.12**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한 조치 지속. 사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회사 피해자에게 코로나 확진 사실 알리지 않음. PCR 검사 권유 미이행

**2021.02**

피해자 퇴사 결정

**2021.03**

가해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하며 피해자의 재산(임대차보증금)가압류 신청, 피해자 이사 계획 있었지만 이사 못함.

**2021.07**

1심 재판부 성폭력 무고죄 무죄 판결, 검찰 항소



2021.12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직장은 피해자가 지원서를 제출한 새로운 직장에서 레퍼런스 체크할 때 “피해자는 사내 스캔들 일으킨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라는 허위 사실 제공

2022.02

2심 재판부 성폭력 무고죄 무죄 확정 판결, 검찰 상고 포기

## 2. 검찰의 성폭력 무고죄 공소제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 1)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 형사 사건 수사 중에는 피해자를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 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매뉴얼>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합당한 근거 없이 모두 배제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 된 불기소처분과 무고 공소제기 함.

사건 담당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 형사 사건 수사 중에는 피해자를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 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매뉴얼>을 무시하고, 성폭력 형사 사건 종결 전에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조사를 진행 함. 검사는 무고죄 조사 직후 피해자가 고소한 가해자에 대한 추행 및 준강간 미수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형사고소 함. 또한 피해자가 피해 다음 날 행위자와 아무렇지 않게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일반적인 피해자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며 불기소처분 이유를 명시 함. 불기소이유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증언은 합당한 근거 없이 모두 배제되고, 가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줌.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



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대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을 본 사건 피해자에게 적용 함.

**2) 가해자는 준강간 미수가 있었던 날 녹음기를 틀어두고 피해자 만남. 검사는 “이날 가해자는 왜 녹음기를 틀고 피해자를 만났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적극적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음.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무고 판단 근거로 활용**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가해자의 추행과 준강간 미수 진술. 피해자는 준강간 미수 피해가 있던 날, 어느 순간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인기척에 깨어났을 때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함.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이것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라고 회사에 주장할 때도 피해자는 녹음파일의 진위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음.

가해자는 강제추행 및 준강간 미수 수사 과정 중 사건 당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며 합의 하에 진행한 성관계임을 주장함. 해당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음.

피해자는 회식 자리를 통해서 친분을 맺고, 그러한 친분이 업무의 원활함으로 이어지는 조직문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피해자도 적응하게 됨.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음.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 양식을 가해자 역시 인지하고 있었음.



- 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 양식을 기억하고 있는 가해자가 사건이 있던 날 일부러 녹음기를 키고 전반의 상황을 녹음함. 신뢰에 기반한, 일상적인 만남에서 녹음기를 켜고 만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임. 가해자가 “왜 녹음기를 켜고,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하지 않음.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고 무고 사건으로 전환하면서 담당 검사는 무고 판단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피의자는 고소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의 상황을 녹음하였는바, 해당 녹취록(제225쪽)에 의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변호에 부합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여 성관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말함.

- ② 검사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의 성관계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준강간 미수 상황 역시 합의한 상황이라고 단정함. 검사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합의한 성관계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성관계에서는 쌍방의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한 성관계라고 보는 것임. 이는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는 즉 데이트 관계나 부부관계에서는 성폭력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와도 같음.

- ③ 피해자는 준강간 미수 피해가 있던 날, 어느 순간부터 전혀 기억나지 않고 인기척에 깨어났을 때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을 모든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대법원<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서는 “술에 취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모텔로 가는 것을 동행하고, 함께 모텔로 편안히 들어갔다고 하여,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림. 검찰은 피



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즉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와 동의를 이뤄졌는지를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가해자가 증명할 것을 요구해야 함. 하지만 검사는 이를 진행하지 않음.

### 3. 검찰의 성폭력 무고죄 공소제기가 피해자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1) 통념의 작동, 검찰의 무고죄 공소제기. '피해자 권리'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을 책임지지 않게 한다.

해당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 가해자를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대했다는 점(불기소처분의 근거),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인하였을 때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녹음파일을 들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 기반하여 무고죄 공소를 제기함. 이는 '성폭력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로 가해자를 제대로 대면하지 못한다'는 피해자다움과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합의와 동의를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성행위=합의'라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여기는 통념이 작동한 결정임.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검사는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무고죄 공소를 제기한 것임. 성폭력이 아닌 다른 범죄의 무고죄도 과연 '의심'만으로 기소가 될까?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역공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 사건 수사 중에는 피해자를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매뉴얼>이 있지만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성폭력 사건 2차 조사와 함께 무고 조사 진행을 안내함.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하고, 검사가 바로 무고죄 수사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미투 이후에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전에는 무고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



어요. 담당 검사는 자기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억지로 무고 수사에 임했어요. 성폭력 사건 수사할 때와 무고 수사할 때 태도와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검사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수사관도 동시에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무고 기소가 될까?'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바로 성폭력 고소 건이 불기소처분 나고, 정말 10분 뒤였나? 몇 분 안 지나서 무고죄 기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났어요.”

2022년 <함께가는 여성> '상담소가 만난 사람 :  
혜림<sup>1)</sup>은 세계가 부정의하게 흘러가게 두지 않았다.' 인터뷰 글 중에서

피해자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매뉴얼>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성폭력 사건 처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염려 속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전에 무고 수사에 임함. 이는 <성폭력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성폭력 수사에 임할 피해자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것임.

또한 피해자는 2019년 12월에 성폭력 고소함. 하지만 불기소 처분→항고→기각→재정신청까지 만3년 가까이 성폭력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검찰의 무고죄 공소제기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질문도,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됨.

## 2) 직장에서의 피해자 불이익 조치가 가중되다.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한 직후 회사는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의 휴직을 명함. 피해자가 휴직을 거친 후 회사에 돌아왔을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반복됨.

첫째, 회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잘못하였으니 양자를 동석시켜 두 사람 모두에게 징계를 내릴

1) 해당인터뷰는 피해자 동의를 구하고 작성되었다. 혜림은 본명이 아니라 가명이다.



것이라며 피해자에게도 잘못을 따져 물음. 둘째, 피해자의 직장 내 성폭력 신고에 대한 회사의 제대로 된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 피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 절차를 회사가 이행할 것을 기대했지만 회사는 2019년 12월 피해자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상급자에게 알리고, 가해자가 퇴사한 2020년 8월까지 제대로 된 조사 및 징계 과정을 이행하지 않음. 즉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 한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음. 셋째, 휴직을 마치고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하였을 때 회사는 피해자를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에서 배제 시킴. 넷째, 상급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가해자가 힘든 일이 있으니 잘 해주라”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배척함. 이러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피해자는 회사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체감함. 그렇기때문에 피해자는 사법기관에서만큼은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루줄 것을 기대하고 형사고소 절차 밟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가해자 징계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업주 즉 회사에 있음. 하지만 회사에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수사·재판기관 임. 수사·재판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회사의 문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됨. 또한 검찰의 무고죄 기소로 인해 피해자의 사내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더욱 가중되었음.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라는 회사 취업 규칙을 근거로, 회사는 무고죄 공소제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함.

그리고 검찰의 무고죄 공소제기는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조치를 정당화함.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팀 단체대화방(단톡방)이 만들어졌지만, 회사는 피해자를 초대하지 않음. 회사의 대다수 직원들이 주말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사무실에 출근하게 됨. 당시 코로나 확진 사실 고지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사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 고지해야 함. 이는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권과 안전권과도 직결된 문제임. 하지만 피해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렇게까지 피해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형사 사건의 피의자, 성폭력 무고죄 피의자라는 낙인과 통념이 작동하였을 것임.

### **3) 검찰의 무고죄 기소는 가해자의 역공격의 근거를 만들고, 피해자를 의심해오 된다는 연속선을 만든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함. 검찰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하자 가해자는 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하며 피해자의 재산(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함. 피해자는 원래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의 재산가압류 신청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이사를 포기하게 됨. 회사의 연속적인 불이익 조치(무고죄 공소 제기 사실 인지 즉시 피해자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 사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정보 미제공)도, 가해자의 피해자 대상 역고소(재산가압류 신청)도 무고죄 무죄 판결 전에 이뤄짐. 이는 검찰의 무고죄 기소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또한 검찰 인지 무고죄 기소는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관점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판부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검찰의 일차적 의심의 연속선에서 재판부 역시 피해자 의심을 지속 함. 재판부는 “녹음 자료를 들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화도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냐?”며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질문함.



#### 4. 나아가며

수사기관 인지 성폭력 무고죄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장기화함.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고, 무고죄 무죄 확정판결까지 했수로 4년이 걸림. 성폭력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했수로 3년째 계류 중. 직장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장기화하고, 가해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공백의 시간도 장기화 됨. 또한 수사기관 인지 무고 사건은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상의 영향력이 작동함. 수사기관은 통념과 의심에 기반한 무고 기소가 개인의 직장 생활 및 일상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그렇기때문에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없이 통념과 의심만으로 무고죄를 기소해서는 절대 안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내세웠을 때 참담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이 딱 몇 글자를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담했어요. 국민으로서 여성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심정이 들었어요.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 버젓이 나온 상황에 만약 내가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면, ‘나는 과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2022년 <함께가는 여성> ‘상담소가 만난 사람 : 헤림은 세계가 부정의하게 흘러가게 두지 않았다.’ 인터뷰 글 중에서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통념과 의심만으로 무고죄 기소를 한다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국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임. 또한 피해를 말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주저하게 함. 이러한 흐름이 과연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인지 수사기관은 스스로 질문해야 함.



2022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 *LAW* 킷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토론 1

#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역고소 대응전략

**박선영**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역고소 대응전략

| 박선영 |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 1. 들어가며

앞서 두 분의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윤경진 활동가님의 ‘성폭력 역고소 실태에 대한 발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와 사건처리 경과를 토대로 성폭력 역고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나 인지에 의한 무고 외에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폭행, 위증, 공갈, 행정소송, 강요, 감금, 공직 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주거침입, 절도, 특수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양한 역고소 양상, 보복성 역고소의 특징과 결합해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가 야기하는 문제, 역고소 상황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 조력 범위와 법률구조사업의 제도적 한계 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소장님의 ‘역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 수사기관 인지 무고 사례를 중심으로’는 수사기관 인지 성폭력 무고죄 사건의 피해자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갖 부당한 상황에 노출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무고를 인지하여 성폭력 사건과 무고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는 무고죄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고 공정한 수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두 발표를 들으며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구



체적인 역고소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 무고죄 수사 시점에 대하여

대검찰청 성폭력수사 매뉴얼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원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완료된 뒤 진행하도록 하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의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기준에 혼선 없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과거 피해자국선번호사로 활동하며 맡았던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에 이어서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국선번호사인 저는 피의자조사에 입회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와 저 모두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른 날 조사를 받았다고 당당하게 요구하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미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었고 두 개의 사건의 수사권자이자 1차적 판단권자였기 때문에 위축된 상태로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 수사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고려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발표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사건의 최종 결과를 2년이 넘도록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사 매뉴얼이 있더라도, 인지 무고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심증이 형성되어 무고 인지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사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수사과 판단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 조사를 하다가 무고 심증을 갖게 된 수사기관이 수사 매뉴얼 때문에 당장 인지를 못하기에 서둘러 성폭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곧바로 무고 인지해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매뉴얼을 준수하였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고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무고를 인정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사 시점 뿐 아니라 수사의 주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지, 예컨대 무고를 인지하더라도 수사는 다른 경찰이나 검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연구나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침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이 무고죄 혐의나 단서를 직접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경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만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sup>1)</sup>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인지 무고의 양상이나 주체가 어떻게 달라질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고 외에 다양한 역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사 매뉴얼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고소 대상이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이 동시에 고소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침해된 법익도 다르고 관할 수사기관도 다른데 왜 순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피해자의 역고소 사건과 피해자의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 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의미 있는 제언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역고소 사건을 조력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역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용할지, 성폭력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역고소가 된 경우에도 무한정 조력할지, 성폭력 사건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역고소 사건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하는

1)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18052000004>, 2021. 12. 20.자 연합뉴스 기사, 검찰 '무고죄 인지수사' 70% 뚫...경찰은 "여력없다"



경우는 허용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결국 성폭력 이외의 범죄 피의자에 대해 수사 개시 시점부터 국선변호사 제도를 두는 것이 되는데, 현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조화가 가능할지, 특정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국선변호사 제도를 허용하고 우대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역고소 대응전략

제가 맡은 토론 주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역고소 대응전략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역고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개의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 일반적인 접근

#### 1) 피해자의 진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의 법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구체성과 일관성, 허위 진술의 동기 부분입니다.

구체성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감정이나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잘 듣고 질문에 취지에 맞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내용은 진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 가급적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 추측 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증거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 진술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날짜나 장소 같은 피해사실을 최대한 특정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모텔 장소가 기억나지 않아서 평소 자주 갔던 모텔 한 군대를 추측해서 진술했는데 CCTV 등을 통해 사건 무렵 모텔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리한 특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서, 법정 증언,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은 참고인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잘못 진술했던 것을 바로잡지 말라거나 시험공부 하듯이 암기해서 똑같이 진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



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진술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경우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선명해지고 진술이 구체적이 될 경우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의 문구를 예로 보면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00와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및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손이 어느 손인지 등 중요한 점에서 일관되지 않는데, 그 불일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조사자의 지적에 따른 반복으로 보인다’ 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례의 예로, ‘비록 이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피해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술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애당초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보다는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나쁜 기억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피해사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묘사하고 있어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아동 자신의 진술이라고 보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등도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경위,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의 상황과 감정상태,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 2) 합의 과정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 허위 진술의 동기로 취급되거나 역고소나 무고 인지의 빌미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조건은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가 조건을 제시하면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수월할 것입니다.

합의과정은 녹음하거나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등 증빙을 남겨두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도 언제든지 합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념 하에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신고를 해놓고 합의를 요구하는 모습이 모순되어 보일 수 있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허위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협박, 강요, 공갈 등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및 허위 진술의 동기와 관련해서 판례가 지적했던 내용을 예로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합의할 때 미리 생각해둔 합의금 액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였고, 그 액수도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합의금을 받으려 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2. 12. 9.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의해 피해자의 동기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 반성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용서 없이 형사 공탁이 이뤄질 경우 법관이 양형에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sup>2)</sup>.

### 3) 증거수집

증거수집 과정에서 범위만 소지가 있을 때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피해를 상담하거나 호소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가해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들어갔다가 정통망범위반 등,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범행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강요,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범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 갖추고 최대한 범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82197>, 2022. 10. 10.자 법률신문,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4) 구체적인 상황

##### 가) 직장 및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첫 번째 발제문에서 원사건(성폭력 사건)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직장 및 공동체 안에서 고용주, 상사, 동료, 부하, 거래처 등의 관계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인적 교류의 범위가 겹치면서도 제한적이어서 사건의 존재가 알려지거나 피, 가해자에 대한 소문이 나는 등으로 가해자가 다른 법익의 침해를 문제 삼으며 역고소 할 여지가 있습니다<sup>3)</sup>.

대표적인 사례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주장하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처벌이 되고, 모욕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상담은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등 정식의 사건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소문을 낼, 소위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를 중심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정황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내 인트라넷이나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공식적인 상담창구라 하더라도 가해자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작성한 후 공개로 올릴 경우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게시글의 내용과 비공개처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경우 대화자간에 어느 일방의 녹음은 형사처벌되

3)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 등 친밀한 관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 않지만 타인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에 대해 민사상 음성권 침해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성권 침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피녹음자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녹음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밀녹음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비밀녹음의 필요성과 효과성, 비밀녹음의 보충성과 긴급성, 녹음 방법의 상당성, 비밀녹음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up>4)</sup>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수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56193 판결 등 참조.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해 신고했으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 등의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에 대해 허위신고를 이유로 고충신고하여 징계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기관이 직권으로 허위신고라는 이유로 징계 등 제재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나) 피해자의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위증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공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는 조력인 본인에게도 불이익하지만, 가해자가 조력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조력인의 상황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조력인도 피해자의 피해가 있다고 하여 범위반 상황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자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발표에서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피해자의 인적 자원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분이 무척 와닿았었습니다. 가족 같은 긴밀한 관계는 조력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피해상황을 목격한 직장 동료나 상급자인 가해자의 불이익 암시나 역고소로 인해 목격진술을 거부하는 식으로 조력을 포



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다) 무고

성폭력 무고 무죄 판례의 예로 ‘피고인이 20XX. 1. 1. 성폭력상당소에 상담을 요청하고 20XX, 1., 6.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고소장의 접수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A가 수사과정에서 강간 사건의 피의자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방어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거부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자신이 내심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을 강간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를 고소한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무고의 유, 무죄 이유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역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마주해야 통념과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도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3. 결어

역고소 문제에 있어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역고소 문제를 걱정하느라 정작 자신의 피해를 돌아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가해자가 원하는 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를 조력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피해자 보호와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제반 역고소 상황을 개인의 영역과 책임으로 한정하지 말고 법과 제도,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 *LAW* 킷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토론 2

# 성폭력 역고소/무고 인지 피해로부터의 보호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성폭력 억고소/무고 인지 피해로부터의 보호

### | 김정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젠더 기반 폭력의 한 형태로서의 성폭력 피해자 처벌

성폭력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외에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를 전환함으로써 방어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바로 그 요인 덕분이다.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수사 도중에 입증 실패를 넘어서 피해자의 악의를 가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소하는 데 이를 수 있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이다. 성폭력이 그저 폭력인 것이 아니라 젠더 기반 폭력이고 차별의 한 형태라는 점은, 성폭력 가해자가 성적 폭력을 자행한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라 주장하는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세우며 수사기관이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를 불신하도록 하는 상황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킨다.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일방적인 범죄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갈등이고 분쟁인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오염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유독 성폭력범죄에서 무고 억고소가 더 많이 활용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수사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은 성폭력 무고 주장 자체가 곧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과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고를 비롯한 억고소의 남용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무고 인지는, 성폭력을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존속시키는 효과



를 가져온다. 각종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입증할 수 없을 것 같아서'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포함된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경험과 진술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와 같이 자신이 어찌 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 불신당하거나 비난 받을 수 있다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폭력 신고가 허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신고율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sup>1)</sup>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와 주변인, 혹은 성폭력 피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 국제인권기구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젠더 기반 폭력을 유지하고 촉진하며 합리화하고 용인하기 때문이다.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가가 젠더 기반 폭력을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유지, 촉진, 합리화, 용인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sup>2)</sup>

###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 무고 처벌에서 원칙의 준수

부당한 성폭력 무고 인지 및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형사사법 절차를 준수하고 무고죄 판단에서 무고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 해석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원칙을 따르라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처벌이 사회에 깊이 스며든 차별적 젠더 기반 폭력의 일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sup>3)</sup>

1) Lisak et al.(2010), False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p.1331.

2)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17.7.26.,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o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CMW/C/GC/35, 24(2).

3)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에게 '폭력행위를 제지하라', '범죄를 수사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의무를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5.11.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여 성폭력 무고 수사의 유의사항을 포함하였다. ‘무고,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각 청에 접수된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수사 중단이란 고소장은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 소환 등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명백한 경우 등의 예외 시에는 무고, 명예훼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뉴얼 개정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칙을 만든 것은 아니다. 무고 여부의 판단은 원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이 끝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성폭력 외의 범죄에서도 원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한 뒤에 원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매뉴얼에 명시한 것이다.

수사와 재판에서 무고죄의 적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형법 제156조) 대법원은 2019년 판결<sup>4)</sup>을 통하여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무고죄의 해석에 있어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령 신고 내용 중 일부만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가 단지 원사건의 입증 실패를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고 원사건과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입증 외에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하고 충족시켜야 함

<sup>1)</sup> ‘부과’한다.

4)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은 당연하다. 국제경찰장협회(IACP)에서도 성폭력 신고가 허위라는 판단은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 이후 성폭력범죄나 성폭력 시도가 ‘없었음’이 입증될 때 가능한 것으로서, 성폭력 ‘없었음’을 성폭력의 입증 실패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입증 실패는 성폭력 입증에 실패한 것일 뿐이고, 무고가 성립하려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입증 실패를 근거로 무고라고 판단하여 인지 수사를 시작하거나 무고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 중에는 성폭력 사건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곧 무고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는 비동의성교와 같이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성폭력범죄로 신고한 데 대하여 ‘합의에 의한 성교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경우는 무고죄의 부적절한 해석, 적용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건의 판단 외에 신고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법률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죄가안됨’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하며, 처벌 근거법의 부재, 범죄 불성립이 곧 악의적인 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사, 재판 기관은 명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 ‘경험칙’, ‘합리적 피해자’ 개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 제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부당한 수사, 재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성폭력 사건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재판 기관이 성폭력 사건의 판단에서 차별적 전형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제경찰장협회의

5) IACP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2005), Investigating Sexual Assaults: Concepts and Issues Paper, pp.12-13.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지침은 신고 접수 전화 수신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이란 존재하지 않으니 어떤 피해자든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명시하면서 시작된다.<sup>6)</sup> ‘이러이러한 전형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안으로 또 다른 전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 반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어떤 경우에도 성립가능한 ‘합리적 성폭력 피해자’의 기준을 만들어 이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개별 사례에 따른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지침에 첨부된 이슈페이퍼에서는 ‘수사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피해자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고소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임을 명시하라고 말하면서, ‘전형적 성폭력’ 통념을 반박하는 현실, 예컨대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법 집행기관에는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통보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대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지연되고 경찰보다 주변 사람에게 먼저 알린다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알코올이나 약물이 관련된 성폭력이 많다는 등 전형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을 제시한다.<sup>7)</sup> 지침은 성폭력 피해 주장을 불신하는 강력하고 만연한 통념으로 인해 성폭력 신고가 무고로 잘못 해석되는 상황들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든다. 경찰이 사건에서 발견된 사실들이 아니라 피해자의 특성이나 태도를 판단 근거로 삼는 경우이다.<sup>8)</sup>

- 
- |                           |                    |
|---------------------------|--------------------|
| • 신고 지연                   | •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
| • 가해자 특정 실패               | • 거짓 진술            |
| • 피해자 특정 실패               | • 피해자의 음주 또는 약물 사용 |
| • 보강증거 부족                 | • 피해자의 성적 이력       |
| •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 | • 성매매 여성으로 보이는 피해자 |
- 

6) IACP(2005), Investigating Sexual Assaults: Model Policy, p.1.

7) IACP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2017), Investigating Sexual Assaults: Concepts and Issues Paper, pp.1-2.

8) IACP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2005), pp.12-13.



- 
- 관할이 잘못된 신고
  - 피해자가 잘못된 주소를 제공
  - 피해자의 공격적 태도
  - 피해자가 사건을 반신반의하는 경우
  - 피해자의 고소 취하
- 

이러한 특징들은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데, 각각은 실제 성폭력 상황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9)</sup>

영국 검찰청에서도 2020년 성폭력 무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지침을 제작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4세 자녀를 둔 28세의 여성이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남편의 협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뒤 무고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양육권을 빼앗겼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고소 취하가 무고 기소의 원인이 되었던 셈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적 비판에 직면한 검찰청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무고 사건 판단 지침을 제작하였다.<sup>10)</sup> 지침에는 성폭력 고소의 취하, 고소 취하의 취소를 무고의 단서로 삼을 때의 고려 사항을 포함하였다. 고소가 진실이었다라도 광범위한 이유에서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며, 그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고 한다.<sup>11)</sup>

- 
- 피의자나 그 가족, 친구, 공동체에 의한 압박감, 폭력의 두려움, 협박
  - 현재의 관계에 기회를 주고자 하는 욕구
  - 사건 이후의 반응 또는 행동 때문에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 당황
  - 법정 출석 또는 증언에서 경험을 재현해야 하는 데 따르는 두려움
  - 가족이나 공동체, 문화적 전통에 의한 압박감
  - 고소인이 성매매에 연루됨
- 

9) IACP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2005), p.13.

10) Archambault, J., Lonsway, K.A., Avalos, L., (2020), Raped, Then Jailed: The Risks of Prosecution for Falsely Reporting Sexual Assault, End Violence Against Women International, p.13.

11) UK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2019), False Allegations of Rape and/or Domestic Abuse, see: Guidance for Charging 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and Wasting Police Time in Cases involving Allegedly False Allegations of Rape and/or Domestic Abuse,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false-allegations-rape-andor-domestic-abuse-s>



- 
- 다른 증거의 부재로 인해 피의자의 진술에 반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
  - 신고 지연
  - 아동 또는 경제적 상태에 끼칠 영향
  - 합의
  - 이주 지위의 불안정
  - 과거 또는 현재의 약물 남용
  - 정신건강 문제 또는 학습장애
  -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은 아니라고 생각 혹은 그렇게 들었음
- 

성폭력 무고 기소 시에는 고소 취하가 곧 피해 주장의 취소, 즉 피해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피해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며, “강간신화와 고정관념 중 어떤 것도 고소의 허위를 증명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접근법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요청한다.<sup>12)</sup> 더불어 검사가 성폭력 사건의 법률 매뉴얼과 기타 정보를 참조해야 한다고 한다.

국제경찰장협회의 지침과 영국 검찰청의 지침은 성폭력 사건 또는 성폭력 무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있어 강간신화와 성폭력 사건의 전형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강조한다.<sup>13)</sup>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는 경험칙에 부합하는가이다. 때문에 널리 퍼진 성폭력에서의 전형을 경험칙으로 삼아 판단 기준으로 두고 피해자가 그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탐색함으로써 성폭력의 진실성 또는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및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직무 교육 등에서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과 이를 반박하는 사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원 또한 연수, 자료 등을 통해 법관의 경험칙에서 성폭력 전형을 분리해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피해자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하라거나 어떤 질문은 하지 말라는 금지 방식의 지침으로는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수사, 재판 기관의 판

---

12) UK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2019).

13) UK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2019).



단에서 편견의 작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 성폭력 수사와 무고 수사의 명확한 분리와 피의자 권리 보장

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로 무고 수사를 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조사가 무고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면서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이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범죄 피의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로 심문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조사자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인지 무고 사건의 피의자 조사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sup>14)</sup> 이는 조사자 본인과 조사 대상자 양쪽 측면 모두에게 유의미하다. 먼저 조사자는 성폭력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인지, 성폭력 무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둘을 최대한 분리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조사에서 조사자가 이미 무고 범죄를 입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는 피해자 조사를 가장한 피의자 조사이며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속임수일 뿐이다. 조사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은 채로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범죄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확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으며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의 조사가 종료되었고 무고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성폭력 범죄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알리고, 조사 대상자를 ‘피의자로서’ 대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 조사로의 전환은 범죄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 및 피의자 권리 보장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14) Archambault, J., Lonsway, K.A., Avalos, L., (2020), p.24.



## 무고 무고죄 적극 인지

2017-2018년 검찰 무고 사건 처리 통계에서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 중 84.1%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고소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5.9%에 불과하였다.<sup>15)</sup>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의 높은 불기소율과 낮은 유죄율은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서 무고 역고소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폭력 피해자를 무력화시키고 신고, 고소한 데 보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고소를 한 사례야말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전형적인 무고 범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다른 범죄에 대한 무고 고소와 달리 성폭력 무고 고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강간신화 등 통념을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부당하게 의심 받는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고 인지 수사 및 기소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역고소 등 남용의 양형 반영

역고소가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여 조사 협조를 방해하고 진술을 어렵게 함으로써 처벌을 면제 받기 위한 방안이라면, 오로지 방어를 목적으로 한 역고소의 남용이 오히려 성폭력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역고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2022년 7월 성범죄 6차 수정 양형기준<sup>16)</sup>에는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로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가 포함되었다. 이는 5차 양형기준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요소를 보강한 것으로, 이전에는 합

15) 김정혜(2019), 성폭력 무고죄 분석, 윤덕경 외,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7, 140쪽.

16) 2022년 10월 1일 시행. [https://sc.scourt.go.kr/sc/krc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https://sc.scourt.go.kr/sc/krc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을 때 가중요소로만 반영하고 집행유예 판단에는 반영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이번 6차 수정에서 합의 시도 외의 2차 피해까지 확장한 것이다. “2차 피해 야기”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고 고소를 비롯하여 온갖 유형의 고소, 고발, 소송 등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하여 남용하는 행위는 합의 시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 남용이 무고죄 등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등으로 기소하고, 그 외에는 ‘2차 피해 야기’ 여부를 검토하여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변호사 윤리 준수

성폭력 피의자/피고인 측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나 그 조력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도록 권장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sup>17)</sup>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성폭력 피의자/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이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가 도리어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처벌 위협을 당하도록 조장한다면 이는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난다. 변호사윤리장전<sup>18)</sup>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또는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하고, 범죄

17) 변호사윤리장전, 2021.5.31. 개정, 윤리강령 1.

18) 변호사윤리장전, 2021.5.31. 개정.



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즉 성폭력 사건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사는 성폭력이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도록 종용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성폭력 무고 고소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하고자 하는 데에 협조해서도 안 된다.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는 성폭력 역고소 남용을 부추기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화를 유지하고 피해자와 주변인을 침묵하도록 하여 젠더 기반 폭력을 존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부정의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윤리 위반에 대해 징계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sup>19)</sup>을 마련하는 등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성폭력 피의자/피고인에 의한 역고소 남발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변호사 집단이 이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성폭력 피해자 및 지원자에 대한 역고소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일반화, 정상화되어 있는지, 성폭력 무고 대응 사례와 ‘성범죄 전문’이라는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실태와 그 영향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역고소' 등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무고 역고소를 비롯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의 남발,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인지 수사 및 기소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 명예훼손, 모욕, 위증죄 고소, 고발과 같이 성폭력 사건의 고소와 증언 자체를 범죄로 몰아가는 방법뿐 아니라 사기, 횡령죄 고소, 양육권 소송, 손

19) 법률 제17828호, 2021.1.5., 일부개정, 시행 2021.1.5., 변호사법 제89조.



해배상 청구 등등 당사자 간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 무수히 많은 유형의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 외의 소송에 연루되는 것 자체만으로 고통을 겪게 되며,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형사 고소, 고발이나 가사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조차 당사자 간의 여러 분쟁과 갈등 중 하나로 간주될 우려마저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 불신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뢰도를 더욱 낮게 평가하도록 할 수 있고 성폭력 사건 입증 절차에 협력할 피해자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때문에 역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무고 인지 수사과 이에 따른 재판에서 피의자/피고인이 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성폭력 사건 지원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역고소 지원이 가능하다.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서도 ‘역고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역고소의 종류에 따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예산상의 한계를 갖는다. 매년 하반기로 갈수록 지원 자격이 아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 예산을 현실화하여 정부의 예산 배분의 문제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 사건은 지원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이 입증의 어려움으로 불기소처분 되는 등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가 종결되면 피해자 변호사 지원도 종료되므로 뒤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은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피해자 변호사가 연속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었다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되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중 일부이다. 구조지원사업은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을 통합하여 1인당 7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그 중 법률지원은 상담소, 지원시설의 이용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역고소 등 피해를 입을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와 연관되어 또는 그와 무관하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또한 역고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역고소 외에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부당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 성적 동의의 기준 변화

성폭력이 성차별 위에서 가능한 것처럼, 무고 등 역고소 또한 성차별을 기반으로 가능해지고 활성화된다. 그러므로 무고 등의 역고소나 성폭력 무고 인지 수사 개시, 기소 등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만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배경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통념에 대한 남성의 응답을 보면,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뜻이다'에 33.6%,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에 38.8%, 심지어는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다'에도 9.6%가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고 답하였다.<sup>20)</sup> 성폭력 통념의 정도를 보면, 성폭력 무고 고소가 오로지

20) 장미혜 외(2019),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117쪽.



악의적인 방어 전략만은 아닐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조금 거친', 하지만 최협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는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력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는 진정으로 자신이 성폭력 무고의 '억울한 피해자'라 믿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소인이 성폭력이라고 믿었다면 성폭력 무고가 성립할 수 없지만 성폭력범죄 역시 성립할 수 없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에 무고죄를 적용하기도, 무고 고소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윤리 위반을 문제 삼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억울함'은 강간신화의 지지를 받아 구성되고 공감을 얻으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난과 의심을 돌리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무고 사건의 판단에서 경험칙과 합리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결국 성적 동의에 있어 적극적 합의 기준을 보편화하고 성폭력의 개념을 동의 기준으로 수정함으로써 성적 관계에서 '합리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